



위험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근로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반복하여 위반한 것을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000부해144

[주 문]

1.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함.
2. 재심 신청인이 재심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정직한정당한 조치로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무 중 수 차례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재심까지 2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의 소명을 듣고 '99. 12. 8 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대형 벌크차량을 이용하여 액화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을 액화물 제조업체인 ○○○로부터 공급받아 전국 각 거래처로 운송하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99. 11. 16 거래처인 ○○중공업(주)에서 가스를 충전하는 중에 운전석에서 신문물을 보고, 같은 해 4. 30 ○○○에서는 충전 중 운전석에서 눈을 감고 가수면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고 신청인으로부터는 경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월에는 ○○○에서 충전 중

2차례에 걸쳐 자리가탈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거래회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사과공문을 발송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벌크차량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로서 이와 같은 운전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9장 제3절 제3조(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안전운행기준) 제4항 제10호에서 "차량의 운전자는 탱크 운전자의 이입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탱크로리 차량의 긴급차단장치 부근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차량의 긴급차단장치를 작동하거나 차량이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마. 징계적용규정 및 관련규정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종류)에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감호, 정직, 해고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징계사유)에는 1~17호까지 징계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그 제4호에는 "직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자", 그 제7호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 또는 거래처의 시설, 자재 등 재산을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징계 정적이 부당하다며 '99. 12. 28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00. 2. 17 이를 “인정” 하였으며, 신청인은 2000. 3. 3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이를 모두 인정한다.

2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액화가스 등의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근로자에게는 직무상 고도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바, 사용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정하여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교육하고 이를 위반하는 근로자에게는 징계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직무상 지시명령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자”는 징계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가스 등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의 안전관리를 규정한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자원부장관)에는 “위험물 주입시 차량운전자가 주입구 옆에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운전자의 정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1 가-다”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신청인은 액화가스 등 위험물을 벌크 차량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가스충전을 하는 중에 주입구 옆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전석에서 신문을 보거나 수면을 취하고, 정위치를 이탈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배하고,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의 차량과 거래처의 시설물을 파손케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

의 행위는 직무상 안전관리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가스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있어서 작업 중에 정위치를 이탈하여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위험과 손실에 대한 예방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피신청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여진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액화가스 등 위험물질을 차량에 주입하면서 직무상 요구되는 정위치 준수 등의 안전주의를 태만히 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시달서까지 제출한바 있음에도 그 후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함으로써 신청인과 그 거래처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에 관한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신청인 회사의 직무특성을 감안할 때, 안전주의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비행을 확인하고 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적정한 조치로서 상당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